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31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허성무 · 박해철 · 김 윤
허 영 · 장종태 · 오세희
박선원 · 조인철 · 윤준병
허종식 · 이재관 · 황정아
정일영 · 이강일 · 김문수
이병진 의원(16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스마트제조산업은 2028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제조업 선도국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혁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하여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공급기업 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룸.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 공급기업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스마트제조 기술 수준(미국 100% 대비 한국 중소기업 74.9%)과 체계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음. 특히, 혁신 기술개발 및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등이 국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조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스마트 제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기술과 경영 역량이 우수한 기술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고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제조업의 미래 초격차를 구축하는 핵심과제임. 본 법률안을 통해 스마트 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 스마트제조데이터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과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마트제조산업, 스마트제조기술,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스마트제조데이터 등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법률 적용 우선 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제조

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지정 및 스마트제조기술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과 실증기반을 조성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스마트제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지원하고, 금융·세제 지원과 우수기업 포상을 통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스마트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가공, 분석, 유통, 활용을 촉진하며, 데이터 표준화,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민관 합동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공무원 파견, 권한 위임·위탁 등을 규정하고, 보고와 검사, 청문 절차,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하여 법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제조산업 육성과 생태계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스마트제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제조산업”이란 제조장비·공정·시스템·기업을 상호 연결하여 생산과정을 자동화·정보화·지능화·자율화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기술·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이나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등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스마트제조기술”이란 스마트제조산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융합적으로 적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이란 스마트제조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을 말한다.

5. “스마트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설계·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관리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와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마트제조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스마트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 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스마트제조데이터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스마트제조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제조산업의 유망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제조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스마트제조기술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스마트제조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스마트제조기술기업 및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 ① 스마트제조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제조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제조산업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5.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스마트제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한 국내외 스마트

제조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지원
2.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기초조사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기술 실태조사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업무의 지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 기반 조성
6.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이 아닌 자는 전담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 및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스마트제조기술 동향·수준 및 스마트제조기술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수준 향상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스마트제조기술의 확산, 스마트제조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스마트제조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유통
 5. 스마트제조기술 관련 산학협력 기반의 연구·조사 지원
 6. 그 밖의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마다 스마트제조기술 실태조사(이하 “기술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스마트제조산업 융합의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전 분야에서 스마트제조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스마트제조기술 실증기반 조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기술 시험, 평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스마트제조기술기업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역량 진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자발적인 역량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수준, 경영역량, 과업관리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하 “역량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역량진단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역량진단의 대상, 역량진단 기준 및 방법, 역량진단 기준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스마트제조기술을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변경하거나 지정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요건·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역량진단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을 것

2. 총 매출액 중 스마트제조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계약의 체결

2. 제10조에 따른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

3. 그 밖의 스마트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이 아닌 자는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스마트제조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

제16조(스마트제조기술기업 창업의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

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스마트제조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 금융지원 및 창업정보의 제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스마트제조산업의 동반성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인 스마트제조기술기업과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 스마트제조산업의 균형 발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국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스마트제조기술기업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제조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혁신주체 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와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하는 스마트제조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 및 스마트제조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스마트제조기술, 스마트제조제품 또는 스마트제조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스마트제조제품 또는 스마트제조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책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 스마트제조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대학이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제21조(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우선 배정)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22조(스마트제조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스마트제조기술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용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용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스마트제조산업 우수기업등 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및 스마트제조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

트제조산업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스마트제조산업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제조산업 및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스마트제조기술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스마트제조기술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및 통합플랫폼 운영

제25조(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스마트제조데이터 생산·수집, 가공·분석, 공유·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의 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가 원활히 생산·수집, 가공·분석, 공유·유통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데이터 접근권한, 공유 및 거래자의 이익보호 등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간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제조데이터 표준화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국내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 활용 현황 및 수요조사
2. 스마트제조데이터 표준 전문가 협의체 운영
3. 국내외 표준화 기구 및 기관 협력
4. 그 밖에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데이터 표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참조모델 개발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통한 표준 참조모델 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스마트제조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등에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2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였거나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구성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조데이터”를 “「스마

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스마트제조데이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를 “스마트제조혁신”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